

raehan

손해사정서

THE CLAIM ADJUSTMENT REPORT



6



사단법인 **한국손해사정사회**



본 사정서 양식은 보험업법 제178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정회원 손해사정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본 사정서 표지의 모든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있으므로 허가없이 복제,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본 회의 정회원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재해자 : 강주연(900405-2352219)
인천시 중구 반달로 10번길 7

손해사정사 : 손해사정 도무
대표손해사정사 김도무
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, 1103호(오피시아빌딩, 광화문)
전화번호 010-6788-5907, 02-707-1777 / 팩스 0504-448-5907

1. 사고 경위

가. 발생일시 - 2025년 9월 1일경

나. 발생장소 - 인천

다. 사고유형 - 차대차

라. 사고원인 - 중앙선침범

마. 사고내용 - 가해차량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함.

바. 피해내용 - ① 늑골골절, S22.32
② 목부위 혈관 손상 및 혈종 S15.7
③ 진탕 S06.0





사. 치료 내용 및 결과 -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, 재활치료

아. 각종 검사 소견 - MRI, x-ray, ct

1. 손해배상금액

가. 가동연한(2025.09 기준)

재해자는 1990.04.05.생의 여성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약35세이며 재해자의 노동능력가능기한은 향후 30년입니다.

나. 직업 및 월 소득액

재해자는 수상 당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.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(대한건설협회, 중소기업중앙회)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,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, 제조부문은 단순도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.

(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+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)/2 X 월 임금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(2025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, 진단일기준)

$(171,037원 + 90,830) / 2 \times 25일 = 3,273,337원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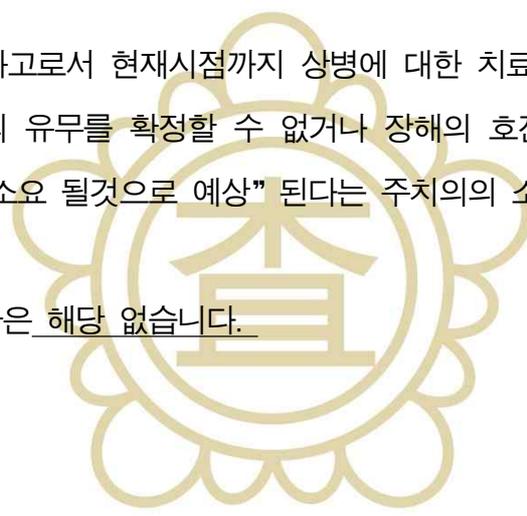
다. 노동력상실률 - 해당무

라. 후유장해기간

장해란 영구장해를 뜻하며 여기서 영구란 “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”, “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”, “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” 입니다.

본건은 2022년 5월 발생한 사고로서 현재시점까지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“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거나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것으로 예상” 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습니다.

따라서 확정된 후유장해 기간은 해당 없습니다.



라. 구체적 손해액

가) 휴업손해

$$(3,273,337\text{원}/30) * 41\text{일} * 85\% = 3,802,526\text{원}$$

나) 장해손해

다) 위자료

$$\text{상해급수 8급} = 300,000\text{원}$$



라) 향후치료비

1,000,000원

총 손해예상액 = 금 5,100,000원



증 제1호증 진단서

증 제2호증 의무기록사본 일체

증 제3호증 영상CD

2025. 12. 29.



위 선임 손해사정사

손해사정 도무

손해사정사 김



KB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

